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3.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3. 17.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6. 3. 28.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이장은 최하 행정기관(청)으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수당)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수행 중의 사건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108호(2006. 02.14-2006.03.06)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 별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의 지원 없이 낮은 수준의 수당과 특히 업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보험가입과 사기 진작 방안으로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행사, 수련대회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문 : 이장의 단체보험 가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도비인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 답 : 재원은 도비 15%, 군비 85%이며, 소요예산은 1인 연간 171천원
총 46,898천원입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3.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